

◦ 향후 수요전망 및 사유

- 향후 2000까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전선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 수요패턴

-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수요경향이 국내 수요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국내제조업체는 그들의 위치 및 시장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MERALCO 및 NPC 등과 같은 대형바이어들이 정부의 전력개발정책에 따른 혜택으로 전선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국내제조업체는 전선용 수입원자재에 별도의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에나멜 코팅페인트의 경우 30%의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정제한 동(전선용)은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政府 施策 ◆

**資本財산업 범위 174업종 확정  
- 租減法시행령 개정안…세제 지원 확대 -**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된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본재산업 육성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收入 금액의 5%까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의 적용

기간을 7년으로 하는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자본재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174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계류의 경우 일반기계·전기전자기계·수송기계·정밀기계제조업이고 부품류의 경우 기계류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조업이며 소재류의 경우 섬유·화학소재, 비금속소재, 철강·금속소재등의 제조업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반도체제조업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업종, 고무제품·자전거제조업등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업종, 시멘트·가정용기구제조업등 생산재로서의 성격이 적은 품목을 제조하는 업종, 무기류제조업등 별도 정책에 의한 육성이 요구되는 업종등은 제외했다.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액의 10~30% 경감하는 조치와 관련, '현장'은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도 포함시키고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로 정했다.

재경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재산업 육성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부 규정도 개정,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취득할 때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관련, 대기업에 한해서는 1회에 5戸이상 취득해야 세액공제를 해 줬으나 이번에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회에 1호이상 취득할 때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소규모 주택소유자가 저축을 통해 좀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소유자도 가입대상자로 추가했다.

25% 세율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복권당첨소득 대상에 지난 7월1일부터 발행한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을 추가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본재산업 육성에 따른 시행령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재산업의 범위=섬유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24)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조업(26) 제1차금속산업(27)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기계장비제조업(29) 사무·계산·회계용기계제조업(30)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31) 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32)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33)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34)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등. ▲소득공제대상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현장'은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장이외에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도 포함되며 연구소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술계의 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동으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함.

'기술인력'은 기술계의 경우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 기능계의 경우 기능장·기능사1급·기능사2급·기능사보등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 소지자.

만약 한 기업이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타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동시에 가진 경우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한 공장에서 자본재와 기타재를 같이 생산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에 의해 주생산품이 자본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함.

한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기타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등에서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근속연수요건은 통산하여 적용.

기술인력의 근속연수는 법인간의 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사업주가 바뀐 경우등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자본재를 생산하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또 연도중에 근속연수 요건(3·7·12년)을 충족하게 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부터 소득공제적용하며 소득공제 대상자는 해당월의 급여를 받기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資本財 산업의 범위(전기관련 분야)

표준산업분류	적용범위(기계류·부품·소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① 전동기 및 발전기·전기변환장치·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절연선 및 케이블·축전지 및 일차전지 ②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 다)·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 장비

## 中小企業 기술지도 실시

### – 工振廳, 10月부터 진단…연내 選定완료 –

공업진흥청은 내년에 1천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품질 및 공정개선(600개 업체), 100PPM 달성을 (200개 업체), 공장자동화(100개 업체), IE(공정혁신) · VE(가치공학) · TPM(종합생산관리) 등 관리기법(100개 업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계획을 확정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46개 기술지도기관의 관계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공진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계획과 관련, WTO체제에 부응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의 조기확보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KS획득 등 일정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업체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도에 지도할 중소기업의 진단 · 평가에 들어가 연말까지 대상업체와 지도위원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기술지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기술지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 제고와 우수지도인력 확보를 위해 지도비용의 30% 정도까지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술지도 효과의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지도 인력으로 생산현장에 대한 경험축적이 많은 연구소와 산업체의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되 생산기술과 관리기술 등을 망라한 복합적인 지도로 중소업체의 기술력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할 방침이다.

#### ■ 國內外 情報 ■

## 日, 電動工具 韓國판매 확대

### – 내년도에 10억엔 목표 –

일본의 유력 전동공구 메이커인 마키타는 현재 연간 수억엔선에 머물고 있는 한국에서의 전동공